

2020년도 제1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20. 2. 4.(화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김경숙 위원(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0건(안건번호 제2020-5272호~5321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위 안전들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결함
다만 이미 전송이 중단되었거나 삭제된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할 것임
- B 위원 : 본 사건은 웹하드사이트에 최근 개봉한 저작물들을 불법 공중 송신한 사건으로 당해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의견임

- C 위원 : 본 심의대상 안전 복제물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웹하드형 온라인서비스에 게시된 자료들로서 최신 대중가요이거나 영상물 들임. 이들은 모두 창작자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음 또는 영상으로 표현한 저작물이라 볼 수 있음.

안전번호 제2020-5272호~5296호(순번 1번~25번)는 최신 대중가요 음원파일 또는 다수의 음원파일을 압축한 파일들로서 복제·전송자는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 등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이는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저작권법 제 133조의3의 삭제의 시정권고가 타당함. 다만,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가 바람직함.

안전번호 제2020-5297호~5321호(순번 26번~50번)는 국내외 최신 영상 저작물(영화)로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이들 최신 영상저작물들은 영리목적의 웹하드에 데드카피로 공중송신을 함으로써,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삭

제의 시정권고가 타당함. 다만,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가 바람직함.

- D 위원 : 50개 안건은 70개의 음악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을 불법복제하여 공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에 대한 것이다.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해볼 때 영리목적으로 공중에 전송한 사실이 있고 또한 저작물의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위원회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0년 제14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2. 7.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